

제 469-1 호

1974. 11.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차 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중랑반포제작  
전화 75-6090

# 시보

차례

## ◎ 규칙

제 1414 호 : 서울특별시 구출장소사무분장규정중 개정 규칙	3
제 1415 호 :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4
제 1417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 규칙	7

## ◎ 공고

제 232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지 세정지 지정 일부 변경 공고	8
제 247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 품생산자 정업체 지정 및 취소 공고	9
제 12 호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공고) : 직인 사용 공고	10
제 291 호 (도봉구청 공고) : 청사이전 공고	10
제 306 호 (도봉구청 공고) : 청사이전 공고	10

◎ 사명	11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 규  
정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14 호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 규정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사무분장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 제 1항 중 "정수제" 및 "정  
수제장"을 각각 "수납제" 및  
"수납제장"으로 하고, "사무 2계  
다음"이 "정리계"를, "사무 2계장"  
다음에 "정리계장"을 각각, 삽입하  
며, 동조 제 2항 중 제 1호와 동항  
제 2호 중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하고, 나목 중 "시세" 앞  
에 "세소관"을, 자목 중 "시세" 앞  
에 "현년도"를 각각, 삽입하며,  
아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 3호 중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 제 4호를 제 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 수납제

- 가. 현년도시세의 징수결정과 세입징수보고
- 나. 현년도시세의 가산금조정 및 특  
축결의
- 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의 충납
- 라. 현년도시세 징수부의 소관, 관리  
집계 및 과정보고
- 마. 현년도시세의 과오납금결의와 편  
불 및 충당
- 바. 시세에 관한 공과금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의 총괄
- 사. 현년도시세에 관한 암류계산의  
통계환가의 항의
- 아.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 자. 현금영수증부의 수불과 세무비의  
집행 및 장비관리
- 차. 현년도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현  
원처리와 징수유예
- 카. 국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 2. 세무 1계
- 나. 세소관의 현년도시세체납제 대금  
체납처분징수촉탁과 분납현준처리

12-4 제 469 호

시

보

1974.11.28.

<p>라. 제소관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및 감면</p> <p>3. 서무2계</p> <p>나. 제소관현년도시세의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징수촉탁과 불납결손 처리</p> <p>라. 제소관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및 감면</p> <p>4. 정리계</p> <p>가. 과년도체납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p> <p>나. 과년도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징계 및 징수보교와 정리상황보고다. 과년도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결의</p> <p>라. 압류재산의 관리와 공매 및 부대업무</p> <p>마. 과년도시세의 불납결손 처리</p> <p>바. 소관체납시세에 관한 조세법칙 사건의 처리</p> <p>5. 지적계</p> <p>가.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p> <p>나. 토지이동신고 조사 처리</p> <p>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검사</p> <p>라. 토지재丈 및 지적도등본 할급</p> <p>마. 무신고이동지조사</p> <p>바. 차적에 관한 민원사무처리</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p> <p>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아래 공포한다.</p> <p>1974년 11월 28 일</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35 호</p> <p>서울특별시의 구의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7조 제 1항 중 "징수체"를 "수납체"로, 징수제작, 직세제 1 계장과 직세제 2 계장"을 "수납제장, 직세제 1 계장, 직세제 2 계장"으로 하고, "직세제 2 계" 다음과 "정리제(승로, 충구에 한한다)"를 실질화하며, 동조 제 2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셋째호는 가족을 "및 과년도"를 삭제</p>
---	---

하며, 봉호 나목중, "파소관" 다음에 "현년도"를 삽입하고, 둘다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둘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1. 수납계

가. 파소관시세의 정수결정과 세입금의 정수보고 작성

나. 파소관 현년도시세의 가산금 및 둑축결의

다. 파소관 세입금의 출납

라. 파소관 현년도 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와 짐계

마. 파소관 현년도 시세의 파오남금결의와 환불 및 증당

바. 파소관시세의 공과금 교부청구와 정수축탁처리

사. 파소관 현년도 체납시세에 관한 암유재산의 공매환수등에 관리처의

다. 파소관 현금·영수증부의 수불자, 파소관 세복의 현년도 정수 및 체납부에 관한 민원처리와

정수유예

차. 파소관 장애작비의 관리  
카. 파내 다른체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정리계(주로; 중구에 한함)

가. 파년도 체납시세의 정수와 암유 및 정수축탁

나. 파년도·시세정수부의 소인관  
라. 짐계 및 정수보고의 정리  
상황보고

다. 파년도시세의 파오남금 및  
가산금 결의

라. 암유재산의 관리와 공매의  
총괄 및 부대업무

마. 파년도시세의 불납결손처리

바. 소관체납시세에 관한 조세  
법적 사건의 처리

## 4. 지적세

가. 지적공부 보관관리 및 정비

나. 토지이용설고조사처리

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검사

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발급

마. 무신고 이동자조사

바. 지적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제 8 조 제 1 항 중 "정수계, 세무제 1

12-6. 제469호

시

보, 1974.11.28.

제 2. 세무제 2 제”를 “수납제, 세무제 1 제, 세무제 2 제와 정리제(종로, 중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 2 항증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 2 호 가독증 “유 흥유식세” 앞에 “현년도”를 삽입하고, 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1. 수납 제

가. 과소관시세의 징수 결정 및 구의 세입금징수보고

나. 과소관현년도시세의 가산금조정 및 독촉결의

다. 과소관 세입금의 출납 및 세외수입금의 징수

(토목과 및 청소파의 세외수입금 제외)

라. 과소관 현년도시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징세 및 과정보고

마. 과소관현년도시세의 과오납금 결의와 환불 및 충당

바. 과소관시세에 관한 공과금

교부청구 및 징수축탁의 처리와

## 구총괄

사. 과소관현년도 세납시세에 관한 압류재산의 공매환가등의 합의  
아. 과소관현금 영수원부의 수불자, 과소관세목의 현년도징수, 세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의 장수 유예

차. 과소관정세작비의 관리

카. 낙세담보에 관한 사항

타. 과내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정리제(종로, 중구는 제외함)

가. 과년도세수시세의 징수와 압류 및 징수축탁

나. 과년도세징수부의 소인관리, 징세 및 징수보고와정리상황보고

다. 과년도시세의 과오납금 및 가산금합의

라. 압류재산의 관리와 공매의 총괄 및 부대업무

마. 과년도시세의 불납결손 처리

바. 소관세납시세에 관한 조세법칙 사건의 처리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11.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아예 폐포한다.

1974. 11. 29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17 호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5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  
다만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 조정 위원  
회의 구성은 제 5조의 2의 규정에  
의하고 정계사전만을 의결하기 위  
한 인사의원은 따로 임명한다.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의 2 (근무평정 조정 위원회) 본  
조 단서의 근무평정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위원장: 내무국장
2. 부위원장: 인사과장
3. 위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차실, 국 주무과장급 5명

4. 간사: 인사과 고과제장

5. 서기: 인사과 근무평정 담당자

제 76조 제 1항중 "확인자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를 삭제하  
고 동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본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 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5조(근무 및 교육가점) (1) 새  
마을지도과(구, 출장소의 경우는  
새마을지도체) 등 및 시정역점사업  
분야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97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당해공무원의 경력평생점  
의 1할을 가점하고 가점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지방행정역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 양성반교육을 이수한 사례  
대하여는 제 97조 및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경부작성

12-8 제469호

시

보 1974.11.28.

및 조정시에 3.5점을 가산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총점이 1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가점총점을 10점으로 한다.

(4) 제1항의 시정역점사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항의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2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  
예정지지정 일부변경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 계획을 변  
경코서 서울특별시공고제 164호

(74.8.23)로 공립공고한바 있는  
사당동 446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조서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 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한다.

3.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1974.11.6

서울특별시장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7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  
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혜택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  
3조, 제 4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증  
생산 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11. 28

서울특별시장

## 1. 지정업체

단위 : \$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증명	74 수출 목표액
107	상지 물산주식회사	박 수	종로구 명동동 4가 186-7	합성수지제품	380,000
317	부영전자공업주식회사	최 윤용	동대문구 승인동 183-13	전기	47,636
617	삼 풍 산 업	김학수	서대문구 남가좌동 5-329	엔진	120,000

## 2. 지정취소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증명	취소사유
310	동강실업주식회사	전종화	동대문구 승인동 313-13	피복	내기업으로 전환
1005	유경 산업사	유성우	도봉구 미아동 164-5	나이론수사	E·도전 출

12-10 제 469 호

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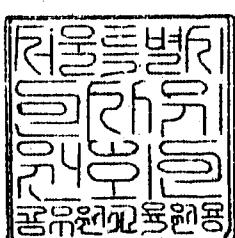
1974.11.28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12 호

직인 사용 공고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제 1339호, 74.11.2)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무국 인사과에서 신시해오던 전형업무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학부문) 직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74.11부터 사용 개시함을 공고함.

가. 공인인영



나. 서체규격: 한글전서체 3.5센티미터 정방형

다. 공인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용)

라. 사용일시: 74.11.25.0시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 도공고 제 291 호

청사 이전 공고

동청사신축에 따라 광화 쌍문동 사무소를 1974.11.24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기 공고함.

다 음

전소재지: 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동168-5  
이전장소: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361-9

1974.11.26

도봉구청장 김택수

◎ 도공고 제 306 호

청사 이전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청사신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청사로 이전하였기 공고함.

다 음

전소재지: 본관 도봉구미아농480-3

별관 도봉구창농7-34

이전장소: 도봉구 수유동192-59

이전일시: 1974.12.9

1974.12. .

도봉구청장 김택수

제 469 호 시 보 1974.11.28. 12-11

사 명	고충전불진단본부 화면근무 ( 75.1.30 까지 ) 를 명함.
◎1974.11.27  · 중 구 지방행정 서기 창원순 ◎1974.12. 1. 지방행정주사보에 주석함.	박 흥 련  지방보건연구사보 시보에 임함.
◎1974.11.28  · 김 진 의 지방의 두기정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김 닌 영  지방보건연구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장에 보함.  · 운 수 2 과 주 행 정 사 홍한선 위생연구소 근무를 임함.	우 찬 호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임함.
지방공득원법제 65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 위를 해제 함.	최 경 회  1호봉을 급함.  도시 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1974.11.29  · 성 동 구 지방건축 기 원 손 대 익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도 봉 구 지방건축 기 원 최 경 환 1호봉을 급함.  영 동 포구 지방건축 기 원 김 평 현 도시 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김 공 인  온대출장소 지방건축 기 사 보 정 한 주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이 죽 출

12-12 제 469호

시

보 1974.11.28.

1 호봉을 금함.	2 호봉을 금함.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기원보사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약제과장에 보함. 지방전축기사보에 일함.
1 호봉을 금함.	1 호봉을 금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약무기원보사보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지방전축기사보에 일함.
1 호봉을 금함.	1 호봉을 금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사보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지방전축기사보에 일함.
1 호봉을 금함.	1 호봉을 금함.
충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사보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지방전축기사보에 일함.
1 호봉을 금함.	1 호봉을 금함.
충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기사 지방약무기과에 임함.	영선과 근무를 명함. 4 호봉을 금함.
	온정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